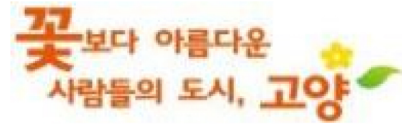


【제 1337 호】



2017년 1월 3일 (화)

고양시보

차 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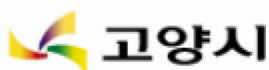
고 시

고양시 덕양구
고시 제2017-1호 하천공사 시행허가 고시 1

공 고

고양시 차량등록사업소
공고 제2017-1호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공고 2

고양시 덕양구
공고 제2017-1호 보상계획 열람 변경 공고 4



하천공사 시행허가 고시

소하천정비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비 관리청 소하천공사 시행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1. 소하천명 : 지정천
2. 시행위치 :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일대
(고양지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)
3.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
 - 가. 목 적 : 고양지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소하천공사
 - 나. 공사개요
 - 하천공 : 소하천 1개소(지정천) 전 구간 L=1282m, B=3.5~18m
 - 호안공 : 식생매트(좌안 5,181m 우안5,057m)
자연석 쌓기 (좌안 937m, 우안316m)
4.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
 - 가. 명 칭 :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
 - 나. 주 소 : 고양시 지축초교길 45
5. 하천공사의 공사기간 : 착공일로부터 2018.12.05.까지

2017년 1월 3일

고 양 시 덕 양 구 청 장

운행정지명령 자동차 공고

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를 제출하여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4조의2(자동차의 운행정지 등) 및 동 시행규칙 제22조(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), 제23조(운행정지에 관한 동의·요청 등) 규정에 의거하여 운행정지명령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1. 공고명칭 :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공고
2. 공고기간 : 2017.01.03. ~ 2017.01.19.(16일간)
3. 공고대상 : “운행정지명령 자동차 현황” 참조
4. 공고내용

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받은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 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및 제82조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※ 기타 의문 사항은 고양시차량등록사업소 특별사법경찰2팀 (☎031-8075-4773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현황 1부.

2017. 01. 03.

고양시차량등록사업소장

운행정지명령 자동차 현황

연번	자동차등록번호	차명	차대번호	운행정지명령 사유	운행정지명령일자	비고
1	64노7592	에쿠스	KMHGF41EBAU025130	소유자 신청	2016.12.22	
2	14모4669	다이하츠레이크	KL90B3C6GFZSJH012	소유자 신청	2016.12.23	
3	15수8819	렉서스 IS250	JTHBK262885055817	소유자 신청	2016.12.27	
4	61머7966	푸조 508 1.6 e-HDI	VF38D9HHR8CL000243	소유자 신청	2016.12.28	
5	03소3560	그랜저	KMHJFC41MP6A051887	소유자 신청	2016.12.28	16.12.30.소유자요청으로 운행정지명령 취하
6	50고2343	올란도 2.0 디젤	KLAYA75YDCK566789	소유자 신청	2016.12.29	

보상계획 열람 변경 공고

고양시 덕양구청장이 시행하는 박재궁천 정비공사(1단계 사업구간)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 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하고자 변경 공고 합니다.

다 음

1. 사 업 명 : 박재궁천 정비공사(1단계 사업)
2. 대상토지 : 박재궁천 정비공사 1단계 사업구간내 편입되는 토지(주교동 202-19번지)
3. 열람기간 : 2017. 1. 3. ~ 2017. 1. 17.
4. 열람(이의신청)장소 :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녹지과 (생태하천팀)
5. 열람내용

구 분	소 재 지	이동전		편입 면적	토지소유자		권리 내용	관계인
		지목	면적		주소	성명		
당초	주교동 202-19	답	228㎡	228㎡	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 206-1	타이어뱅크	-	-
변경	주교동 202-19	답	288㎡	288㎡	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 206-1	주식회사	-	-

6. 보상의시기·방법 및 절차 : 보상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거 지급하며,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보상액은 개별 통지합니다.
7. 열람 및 이의신청 :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상기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기할 수 있으며 의견이 없을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.
8. 기 타
 - 가.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개별통지 하였으나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 합니다.
 - 나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녹지과(생태하천팀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(전화 : 031-8075-5251)

2017. 1. 3.

고양시 덕양구청장